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병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8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1일

발 의 자 : 고병국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종무, 박상구, 신정호, 임만균,
경만선, 강대호, 김제리, 이영실,
이경선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'19.8.6.)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'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'으로 개정하고, 회의록을 제외한 심의자료는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함으로써,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한 공개대상을 회의록과 심의자료로 구분함(안 제61조제2항 본문)
- 나.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는,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함(안 제61조제2항제4호 신설)
- 다.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(안 제61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본문 중 “회의록의”를 “회의록 및 심의자료의”로 한다.

제6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.

제61조제3항 중 “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”를 “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1조(회의록) ① 위원장은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<u>회의록의</u>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 2.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 3.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<u>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</u> 방법으로 한다.</p>	<p>제61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회의록 및 심의자료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.</u></p> <p>③ ----- <u>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</u> -----.</p>